

“필기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 일반남자 · 일반여자 · 경찰행정 -

2021년 제2차 경남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 일반남자, 일반여자, 경찰행정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신체·체력·적성검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금)

경 상 남 도 경 찰 청 장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 일반 남자 (153명)

※ 응시번호순

연 번	응 시 번 호	연 번	응 시 번 호	연 번	응 시 번 호	연 번	응 시 번 호
1	10052	14	10302	27	10414	40	10532
2	10080	15	10318	28	10425	41	10541
3	10096	16	10326	29	10428	42	10545
4	10150	17	10335	30	10439	43	10551
5	10190	18	10339	31	10447	44	10609
6	10198	19	10364	32	10451	45	10611
7	10209	20	10367	33	10456	46	10617
8	10239	21	10388	34	10494	47	10631
9	10276	22	10390	35	10495	48	10633
10	10292	23	10392	36	10501	49	10635
11	10293	24	10397	37	10508	50	10638
12	10296	25	10405	38	10515	51	10646
13	10299	26	10411	39	10530	52	10668

연 번	응 시 번 호
53	10724
54	10737
55	10755
56	10765
57	10772
58	10779
59	10800
60	10813
61	10829
62	10831
63	10834
64	10840
65	10843
66	10855
67	10870
68	10872
69	10880
70	10887
71	10908
72	10919
73	10925

연 번	응 시 번 호
74	10942
75	10945
76	10946
77	10948
78	10958
79	10966
80	10968
81	10969
82	11000
83	11001
84	11008
85	11050
86	11080
87	11095
88	11109
89	11112
90	11117
91	11118
92	11120
93	11146
94	11184

연 번	응 시 번 호
95	11191
96	11214
97	11253
98	11257
99	11261
100	11264
101	11267
102	11289
103	11301
104	11319
105	11334
106	11336
107	11337
108	11347
109	11360
110	11378
111	11380
112	11401
113	11402
114	11403
115	11412

연 번	응 시 번 호
116	11421
117	11430
118	11437
119	11450
120	11535
121	11557
122	11583
123	11590
124	11594
125	11598
126	11622
127	11630
128	11631
129	11644
130	11646
131	11677
132	11719
133	11733
134	11746
135	11769
136	11792

연 번	응 시 번 호
137	11809
138	11819
139	11820
140	11821
141	11825

연 번	응 시 번 호
142	11852
143	11863
144	11884
145	11909
146	11911

연 번	응 시 번 호
147	11928
148	11931
149	11937
150	11945
151	11949

연 번	응 시 번 호
152	12045
153	12061

이 상 153명

□ 일반 여자 (62명)

※ 응시번호 순

연 번	응 시 번 호
1	20054
2	20079
3	20127
4	20153
5	20161
6	20164
7	20176
8	20180
9	20183
10	20190
11	20219
12	20225
13	20228
14	20244
15	20257
16	20282

연 번	응 시 번 호
17	20311
18	20325
19	20330
20	20336
21	20340
22	20343
23	20358
24	20406
25	20408
26	20421
27	20469
28	20475
29	20478
30	20486
31	20491
32	20497

연 번	응 시 번 호
33	20498
34	20508
35	20528
36	20534
37	20565
38	20568
39	20596
40	20597
41	20598
42	20605
43	20611
44	20620
45	20630
46	20632
47	20637
48	20670

연 번	응 시 번 호
49	20683
50	20702
51	20755
52	20757
53	20768
54	20779
55	20792
56	20798
57	20813
58	20826
59	20830
60	20832
61	20839
62	20842

이 상 62명

□ 경찰행정 (21명)

※ 응시번호 순

연 번	응 시 번 호
1	50003
2	50015
3	50017
4	50021
5	50026
6	50028

연 번	응 시 번 호
7	50029
8	50038
9	50045
10	50049
11	50051
12	50055

연 번	응 시 번 호
13	50056
14	50065
15	50068
16	50070
17	50088
18	50093

연 번	응 시 번 호
19	50099
20	50102
21	50104

이 상 21명

필기시험 합격자 일정 안내

코로나19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건물 내·외 방역 및 측정기기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응시자 여러분은 향후 모든 시험 전형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여야 하며, 시험장 입장 시 발열체크,
손 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응시자간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 제출 등 예비소집

일정은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공고'문을 참고 하십시오 ⇨ '21. 9. 16.(목) 17:00

2 체력검사 실내 종목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일정은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공고'문을 참고 하십시오 ⇨ '21. 9. 16.(목) 17:00

3 체력검사 실외 종목 (100m, 1000m 달리기 + 도핑테스트)

일정은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공고'문을 참고 하십시오 ⇨ '21. 9. 16.(목) 17:00

4 적성검사

일정은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공고'문을 참고 하십시오 ⇨ '21. 9. 16.(목) 17:00



필기합격자 유의사항

- 코로나19 관련하여 향후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지침 준수, 개인 건강관리 등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 유증상자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반드시 경남청 교육계(055-233-2332, 2432)로 연락
-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은 '21. 9. 29.(수) ~ '22. 6. 30.(목)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과목별 공개됩니다.
-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및 격리 중인 자,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장소·시간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 ※ 사전에 교육계로 연락하여 시험가능 날짜 및 장소확인
- 향후 일정에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미지참 시 응시불가)
- 체력검사 중에는 마스크를 벗는 것을 원칙, 이동 및 대기 시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다음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즉시 퇴장조치 합니다.

- ▶ 발열검사 등 시험 쏘 과정 방역관련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 ▶ 감독관의 별도 안내 없이 대기 및 이동 과정에서 마스크를 탈의한 경우
 - ▶ 그 밖에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감독관이 판단한 경우
- 체력·적성 검사장은 부모, 학원관계자, 친구 등 일체 출입을 금지합니다.
- 시간 엄수, 해당 장소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시간 내 미도착 시 응시불가)
- 신체검사 규정이 개정되어 새로운 양식인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파일 첨부)로 발급받아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체력검사 방법
 - 신체·체력검사는 남·여 구분하여 실시
 - 100m달리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는 전자측정 장비로 측정
 -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자는 상의 탈의, 여자는 헤어캡·상체밴드 착용 후 측정
 - 운동복, 운동화(운동장 사정으로 스파이크화 착용 금지)
 - ※ '운동복 상의'는 입었을 때 늘어지지 않는 흰색 계열 옷 착용
 - 장갑이나 손 미끄럼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는 사용이 금지되며,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 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음
- 도핑테스트 실시 예정
 - ※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복용(스테로이드 등)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 자	100m 달리기(초)	13.00이내	13.1~13.5	13.6~14.0	14.1~14.5	14.6~15.0	15.1~15.5	15.6~16.0	16.1~16.5	16.6~16.9	17.00이후
	1,000m 달리기(초)	230이내	231~236	237~242	243~248	249~254	255~260	261~266	267~272	273~279	280이후
	윗몸일으키기(회/1분)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 악력(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팔굽혀펴기(회/1분)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 이하
여 자	100m 달리기(초)	15.5이내	15.6~16.3	16.4~17.1	17.2~17.9	18.0~18.7	18.8~19.4	19.5~20.1	20.2~20.8	20.9~21.5	21.6이후
	1,000m 달리기(초)	290이내	291~297	298~304	305~311	312~318	319~325	326~332	333~339	340~347	348이후
	윗몸일으키기(회/1분)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좌우악력(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회/1분)	50 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 이하

※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 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종목	측정방법 등
1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이상 나. 시설기구 1) 100m 직선주로 2코스 이상 2) 계측기 2개 3) 출발신호기 1개 4) 2인1조가 동시에 출발할 때 중간 코스는 공간으로 둔다. 다. 측정방법 1) 측정시간은 1/10초단위로 한다. 2) 중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하여 20분 후에 다시 달리게 한다. 3) 부정출발 2회 실격으로 한다. 라. 기록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계속 기록한다.
1,0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이상 나. 시설기구 1) 400m(200m) 타원형 트랙 2) 계측기 2개 3) 출발신호기 1개 다. 측정방법 1) 타원형운동장 또는 노상경주 코스를 사용한다. 2) 측정시간은 초 단위로 한다. 라. 기록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초 단위로 계측하여 정확히 기록한다.

종목	측정방법 등
윗몸일으키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이상 2) 기록원 1명이상 나. 시설기구 1) 윗몸일으키기대 2) 계측기(1대 이상) 다. 측정방법 1) 양발을 30cm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2) 측정횟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쪽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3) 양 팔꿈치로 양 무릎 위를 정확히 대었을 때를 1회로 간주하여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라. 기록 1) 정확한 동작으로 1분 동안에 실시한 횟수를 기록한다. 2) 운동속도는 자유로이 한다. 3) 실시도중 목뒤에 마주잡은 손을 떼거나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으면 그 횟수는 무효로 한다.
악력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이상 2) 기록원 1명이상 나. 실시도구 악력기 다. 측정방법 악력기에 의한 기계측정을 한다. 라. 기록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4회 평균을 측정한다.
팔굽혀펴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이상 2) 기록원 1명이상 3) 검사원 1명이상 나. 실시도구 매트, 초시계 1개 다. 측정방법 1)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여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2)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매트 간격이 5cm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한다. 라. 기록 : 1분내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경찰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검사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I. 금지약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drostanolone ▶ methenolone
- ▶ methasterone(17 β -hydroxy-2 α ,17 α -dimethyl-5 α -androstan-3-one)
- ▶ stanozolol
- ▶ 1-testosterone(17 β -hydroxy-5 α -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

4. 마약류 : 총 11종

-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 pentazocine ▶ pethidine

II. 금지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경찰청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6호 관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한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 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를 원서접수 시 하여야 하며, 동의를 체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 남 ☐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응급 ☐

기간(주/월) 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 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 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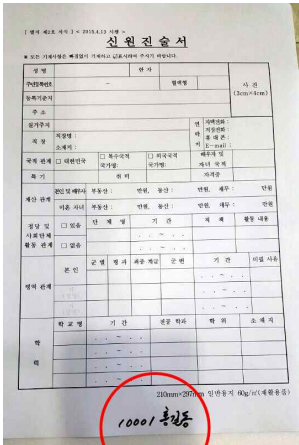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1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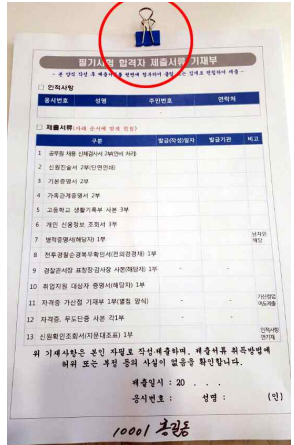
- 해당란은 서명란을 제외하고 빠짐없이 워드로 작성하고, 제출서류 매장 중앙 하단에 반드시 응시번호 및 성명 기재
※ 밀봉 처리하는 봉투 제출 시에는 봉투 하단에 기재
- 모든 서류는 A4 단면으로만 출력하고, 서류 사이 띠지 등을 붙이지 말 것
- 제출서류 기재부 상 순서에 따라 편철
- 전체 서류 편철 시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관공서 발급서류에 사용된 스테이플러도 직접 제거 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우편접수 불가



<응시번호 · 성명 기재방법>

★ 서류 준비 시 주요 질문 사례 ★

1. 응시자 제출서류는 응시자 본인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전화 문의 시 수험번호와 이름을 먼저 말씀해주**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2. 서류 작성은 **워드**로 작성해 제출해 주십시오.
3. 학위 및 자격증은 **10.29.까지** 유효, 어학능력 자격증은 **11.22.까지** 유효해야 하므로 참고하십시오.
4. 신체검사는 담당의사의 판단(합격·불합격·판정보류)에 따릅니다.
5. 신체검사 병원은 **국공립병원, 종합병원**에 한하며 개정된「**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서식 사용합니다.
6. **개명**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첨부합니다.



<전체 서류 편철방법>

【서명에 대하여】

서명이란 ...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성명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특이한 모양의 싸인은 안되며 모든 제출서류에 적용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① 제출서류 기재부**②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약물검사 TBPE 포함) 1부 <신양식으로>**

- ▶ 신속한 검사 필요, 종합병원 및 국.공립병원장 발행으로 '밀봉' 상태로 제출
- ▶ 반드시 약물검사필(T.B.P.E), 시력(나안.교정), 청력(데시벨) 수치가 기재되어야 함
- ▶ 신체검사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추가된 검사항목이 있으며 반드시 신 양식인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파일첨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색신인 경우 등 별도 정밀검사가 필요하면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 다음 페이지의 "신체검사 관련 참고사항"을 병원에 제출하여 정확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신원진술서(동의서 포함 총 4매) 2부

- ▶ 단면 인쇄하여 2매 자필 및 워드작성, 각 반명함판(3*4)사진 부착 또는 문서 삽입 인쇄
- ▶ 신원진술서 서식에 포함된 동의서 2매 반드시 작성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⑤ 기본증명서(상세) 2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 ▶ 본인기준 발급, 주민번호 공개용(주민번호 13자리 표기)으로 발급, 3월내 발급분 유효

⑥ 병적증명서 2부(일부 응시자만 제출)

- ▶ 응시요건상 연령제한 넘는 대상자만 제출합니다.
- ▶ 주민센터, 지방병무청, 인터넷 발급(정부24) 가능

⑦ 개인신용정보서 2부

- ▶ 대출 등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가 있다면 소명자료 제출 가능(별도양식 없음)
- ▶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접속 무료발급 가능), (주)나이스신용평가정보, (주)코리아크레딧뷰로(방문, 인터넷, 우편 이용 발급 가능) 등

⑧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보훈처장 발행, 해당자만 제출) 1부**⑨ 경력경쟁채용 증빙자료 1부(경채 응시자만 제출)**

- ▶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경찰행정, 사이버, 교통공학, 법학, 세무회계 응시자만 제출

⑩ 자격증 가산점 및 결격사유 등 기재부 1부

- ▶ 제출할 가산점 인정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0점으로 기재 하고 결격사유 도 기재 후 제출

⑪ 자격증, 무도단증(2단 이상) 사본 각 1부

- ▶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은 가산점 기재부에 기재하고 사본 제출할 필요 없음
- ▶ 취득중인 자격증의 경우 늦어도 '21.10.29.까지 별도 제출해야 시험에 적용 가능

⑫ 개인정보 조화·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⑬ 체력검사 수험생 서약서 1부**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장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 서류 기재부

-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집게로 편철 -

☐ 인적사항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	

※ 향후 연락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교육계(055-233-2332, 2432)로 통보

☐ 제출서류

※ 아래 순서에 맞게 편철

순서	제출서류	참고사항	비고
1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봉인 처리)	신양식 활용	
2	신원진술서 4매 2부(단면인쇄)	동의서 포함 4매, 사진 첨부	정보과 제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정보과 제출
4	(상세)기본증명서 2부, (상세)가족관계증명서 2부	3개월 이내, 본인 기준, 주민번호 공개	
5	병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2부	응시연령 초과자만	
6	개인신용정보서 2부		
7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만) 1부	해당자만 제출	
8	자격증 가산점 및 결격사유 등 기재부 1부	가산점 등 없어도 제출	
9	자격증, 무도단증 사본 각 1부		
10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1	체력검사 수험생 서약서		
12	경력채용 증빙자료 (경찰행정, 사이버, 교통공학, 법학, 세무회계)	경채자만	

위 기재사항을 작성·제출하면서 제출서류 취득방법에
허위 또는 부정 등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응시번호 :

성명 :

(자필서명)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시험실시기관	②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검 사 내 용

키	cm	체중	kg
허리둘레	cm	혈압	
(교정)시력	좌: () 우: ()	색각	청력 좌: dB 우: dB
종양질환		이비인후질환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간질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질환	
신경질환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안질환	
정신질환		흉부X선검사	
직무에 적합한 신체 문신		사시	
		약물(TBPE)검사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합격 []판정보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공고일 기준 3월
------	-----------

210mm×297mm[백상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①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

나. ②란에는 응시한 분야를 적어야 합니다.

(예: 순경 공채, 간부후보생, 변호사 경채 등)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신부나 홍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홍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홍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홍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병원에 보여주세요)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19.12.24. 일부개정)」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21.2.3. 개정)」 제34조의2 별표5 기준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세부기준을 적용해주시고, 별지 제3호 서식인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로 발급해주시시오.
- ▶ 병원에서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검사 및 신체검사서 발급해주시시오.
 - ✓ 피검자로부터 시험 실시기관, 응시분야, 응시번호, 인적사항 등을 제출 받은 후 신체검사 결과지(신체검사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인비로 발급**해주시시오.
 - ✓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국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본에 한**합니다.
 - ✓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약물검사(TBPE)를 추가**해야 합니다.
 - ✓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청력 수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 **색신 이상인 경우에는 구두로 고지**해주시고, 응시자에게 **아노말로스코프경 검사 결과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알려**주시시오.
 - ✓ '21.4.10. 이후 이미 신체검사를 받은 수험생이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기준에 따른 추가항목 검사 결과를 반영하고, 약물검사(TBPE)만 새로 실시해 개정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 ▶ 문의사항은 **경남경찰청 교육계(055-233-2332, 2432)로 문의** 주십시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2. 3>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제34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色覺)	색각이상(약도 색약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 (斜視)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비고

위 "체격" 항목 중 "직무에 적합한 신체"와 "문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평가 항목	내 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직무에 적합한 신체	팔다리와 손 발가락	팔다리와 손 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경찰 장비 및 장구 사용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허리 휜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 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시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안정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 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안정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문신	혈오성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음란성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차별성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
	기 타	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노출 여부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정복 포함)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얼굴, 목, 팔, 다리 등 포함)

비고

위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체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성 명		②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사 진] 사진파일 가능 (3cm×4cm) · (3.5cm×4.5cm)
⑤등록기준지						
⑥주 소						
⑦실거주지						
⑧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⑨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⑩국 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국가명:	☐ 외국국적 국가명:	배우자 및 자녀 국적		
⑪자격·면허						
⑫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⑬정당·사회 단체 활동	☐ 있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 없음			. . ~ . .		
				. . ~ . .		
⑭병 역	본 인	군 별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 . ~ . .	
	자 (성명)				. . ~ . .	
	자 (성명)				. . ~ . .	
⑮학 력 (고교이상)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국적(배우자, 자녀 포함), 자격·면허, 재산(배우자, 미혼 자녀 포함), 병역(자녀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주사실(거주목적 및 동반가족 등 포함), 가족관계(부모, 자녀, 배우자 부모 및 북한거주가족 등 포함), 친교인물(성명, 직업 등 포함)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 · 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정당·사회단체 경력
----	------------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5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	--------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②8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②9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③0 연락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③① 년 월 일
③②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 (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㉓ 본인			자필서명	자필 서명
㉔ 배우자			자필서명	해당없음
㉕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㉖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㉗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가 족(예시)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인사처) ■ 주민·범죄경력·수사·수배 <u>조회자료</u>(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원조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 번	행정 정보 명	연 번	행정 정보 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6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자동차등록원부(갑)		
3	출입국에 관한사실 증명		
4	병적증명서		
5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38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9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 ④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④1

전화번호 : ④2

※ 작성요령 2장은 작성 시 참고만 하고 인쇄하여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원진술서 작성요령

- ① 한글 성명 ② 한자 성명 ③ 13자리 모두 기재 < 예)000000-0000000 >
- ④ 증명사진 또는 증명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칼라, 흑백) 첨부 가능
- ⑤ 기본증명서에 기재 되어있는 등록기준지(본적)
- ⑥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기재 되어있는 주소
- ⑦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
- ⑧ 현재 재직 중인 직장 / 퇴사한 직장 기재하지 않음
- ⑨ E-mail주소, 휴대폰 번호 필수 기재(없을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⑩ ☒ 또는 ☐ 등 선택 체크 명확히 표시
- ⑪ 자격증 또는 면허증 종류·급수·등급 등 기재
- ⑫ 본인, 배우자, 미혼 자녀 소유의 채권, 채무만 기재(부모소유재산 기재 하지 않음)
※ 승용차 소유는 동산 부분에 차량 종류·번호 포함하여 기재
- ⑬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사항 있을 경우 기재
- ⑭ 본인의 군 경력 기재(의가사 제대, 미필 등은 사유 꼭 기재)
- ⑮ 고교이상 최종학력까지 졸업, 전학, 중퇴, 자퇴, 재적, 검정고시 등 기재
※ 석사, 박사 등 빈칸 부족 시 아래 부분에 추가로 작성
- ⑯ 사회생활, 자원봉사 등 대표성 있는 경력 기재
※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담당자(부서) 연락처 기재(폐업한 경우는 제외)
- ⑰ 단순여행을 제외한 공무여행, 어학연수, 교환학생, 유학 등 해외 거주 사실 기재
- ⑱ 부모, 배우자, 자녀 순서로 기재 / 형제관계 기재하지 않음
- ⑲ 배우자의 부모(시부, 시모, 장인, 장모)
- ⑳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기재
- ㉑ 친교(지인, 직장동료) 인물 기재(형, 누나, 형수, 올케 등 가족은 기재하지 않음)
※관계, 성명, 직업·직책, 연락처 반드시 기재
- ㉒ 작성일자 ㉓ 성명, 서명(자필로 본인이름을 알아 볼 수 있게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요령

- ㉔ ㉕ 동의함에 ☒ 표시(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한사유 해당)
- ㉖ 고유식별정보 처리 확인(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조사가 어려움)
- ㉗ 작성일자 ㉘ 성명, 서명(자필로 본인이름을 알아 볼 수 있게 작성)
- ㉙ (필요시) 법정대리인 작성 활용
- ㉚ 법정대리인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휴대전화 없을 시 집 전화번호 기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요령

- ㉛ 작성일자 ㉜ 성명, 서명(자필로 본인이름을 알아 볼 수 있게 작성)
- ㉝㉞㉟㊱㊲ 본인, 배우자(대리 작성 안 됨), 자녀(대리 작성 가능)만 작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작성요령

- ㉛ 주민번호 작성
- ㉜ 작성날짜 ㉝ 성명, 자필서명 ㉞ 생년월일 ㉟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개인신용정보서 발급방법

● 발급기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업자(법인)

※ 은행은 본인에 한해 열람만 가능하고 일부 발급해주는 기관이 있으나 일정한 양식이 없고 증명서가 아니므로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정보서에 한함
단, 발급기관 직인이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발급방법

- 은행연합회: 방문, 인터넷 이용(www.credit4u.or.kr)
- 신용정보업자: 방문, 인터넷, 우편이용 가능

상 호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주)나이스신용평가정보	www.mycredit.co.kr	02)2122-8000
(주)코리아크레딧뷰로	www.allcredit.co.kr	02)708-1000

※ 제출서류는 공문서로 개인 임의로 위조 또는 변조 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자격증 가산점 및 결격사유 등 기재부

☐ 인적사항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	

☐ 자격증 가산점 【총 점】 ← 총점은 최고 5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번	자격증(무도)명	가산 점수	자격증(등록)번호	발급(등록) 일자	발급기관
1					
2					
3					
4					
5					

☐ 결격사유 등 해당 여부

내용	해당 여부
· 복수국적 해당 여부	☐ 해당 없음 ☐ 이중국적
· 신체상 문신 유무	☐ 없음 ☐ 있음

- 가산점 인정과 무관한 자격증은 제출 불요
- 동일 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
- 가산 점수는 아래 [시험공고문 붙임기] 가산점 기준표에 따라 기재
-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기간 최종일자까지 가능

1. 위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자격증 취득방법에 허위,부정행위 등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에 의하여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임용 후라도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응시번호 :

성 명 :

자필서명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별표6)

분 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학 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전자·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전자·전자계산기산업기사
국 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 국 어	영 어	-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New TEPS 488 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G-TELP Level 2 89 이상	-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New TEPS 399 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G-TELP Level 2 75 이상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New TEPS 268 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G-TELP Level 2 48 이상
	일 어	-JLPT 1급(N1) -JPT 850 이상	-JLPT 2급(N2) -JPT 650 이상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중국어	-HSK 9급이상(新 HSK 6급)	-HSK 8급 (新 HSK 5급-210점 이상)	-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노 동		-공인노무사		
무 도			-무도 4단 이상	-무도 2·3단
부 동 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교 육		-청소년상담사 1급	-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지도사 2·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재 난 · 안전관리		-건설안전·전기안전·소방·가스기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산업안전·건설안전·소방설비·가스·위험물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화 약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 통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산업기사
토 목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법 무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급
의 료	-의사 -상담심리사 1급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작업치료사
특 허	-변리사		
건 축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 건축설비기사	-건축·건축설비·건축일반 시공산업기사
전 기	-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기 술사	-전기·전기공사기사	-전기·전기기기·전기공사 산업기사
식품위생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환 경	-폐기물처리기술사 -화공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화공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비 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는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2.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3.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4.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한다.

※ '12. 1. 1. 이후,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워드프로세스 1급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개)**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1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택견보존회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2. 정보조회·제공·활용목적 및 범위

- 1) 상기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신임교육 목적 포함) 등을 위해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또한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활용하여 채용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범위 : 생체정보(지문), 기본정보, 신원조회, 학위조회, 자격조회, 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 운전면허조회 등
- 3) 그 외 정부(행정정보공동이용망),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전산시스템정보를 경찰청이 요청·조회·활용하여 채용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범위 : 기본정보(지문자료), 신원조회, 학위조회, 자격조회, 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 운전면허조회 등

3. 동의서 유효기간 : 제출일로부터 최종합격자 발표 시까지

20 . . .

성명 : (인)

경남경찰청장 귀하

※ 개인정보동의서는 모든 사업 신청자에 대해 작성, 제출하며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확인

서 약 서

본인은 '21년 10월 18일 부터 경남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21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경찰청의 체력시험 규정에 따르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시험 전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거나, 가족 중 심장질환 등의 병력이 있는(있었던) 경우 감독관에게 이를 사전에 알리고, 시험 진행 중 본인의 신체에 이상 증상이 있다고 느낄 시에는 이를 바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그에 따른 조치를 받는다.
3. 본인은 시험 진행 중 감독관이 시험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감독관의 지시를 어길시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알고 있다.
4. 본인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소변 채취 절차에 응할 것을 동의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시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물의를 야기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6. 본인은 위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 받았으며, 위의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자필서명)